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9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홍문표·김용판

박 진 • 윤한홍 • 김승수

조명희 · 추경호 · 양금희

최형두 · 이 용 · 하영제

이주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법률 제 호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식품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해양수산부장 관 및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

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 의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	제15조(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
원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	원) ① <u>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</u>
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	도지사는
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	
다.	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